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516058 손해배상(지)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정공진

피 고 1. B

2. C(개명 전 이름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훈

변 론 종 결 2026. 7. 7.

판 결 선 고 2026. 8. 2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6.부터 2026.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금형, 기계, 전자부품 제조업 등 분야에서 설계, 모델링, 디자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E'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평택시에서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F'라는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위 사업체의 대표자이다. 피고들은 부부이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2. 10. 18.경부터 2023. 11. 16.까지 위 사업체의 사무실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하고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4. 3. 15.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약7620 저작권법위반 사건,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이는 확정된 형사재판이 약식명령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약식명령 내용과 같이 피고 B이 2022. 10. 18.경부터 2023. 11. 16.까지 이 사건 사업체의 사무실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하고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위 프로그램의 이용기간이 2022. 7.경부터 2023. 11. 16.라는 등 위와 같이 위 약식명령에 따라 확정된 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3)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복제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이 사



건 프로그램의 정품사용료 상당의 금액이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5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품가격은 74,000,000원이다. 원고의 손해액은 위 정품사용료인 74,000,000원인데, 그중 명시적 일부청구로써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여부

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고, 통상적으로 수요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 모듈만을 매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정품사용료에는 정품 구매자만을 위한 일정 기간 동안의 무상보증과 유지보수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프로그



램의 견적서에 기재된 단가에는 그 판매상인 주식회사 G의 중간 마진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3)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가)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은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것처럼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다.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들의 업무관련성 정도, 개별 모듈의 구성 및 가격,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통방식, 원고가 다른 위반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한다.

(1)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전체 모듈의 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5개 하위 모듈을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4. 15. 선고 24가단114214 사건(1,0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25. 2. 4. 선고 24가단115984 사건(2,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3가단5335374 사건(1,4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4가단102599 사건(9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2가합538383 사건(1,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4나72607 사건(1,000만 원) 등



전부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2)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 형태 및 규모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일부 모듈과 관련된 일부 기능만을 업무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정품을 구매하더라도 5개 모듈 전부를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다만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1년 구독료를 기준으로 실제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들이 무단으로 설치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구독형이 아니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파일을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 H의 불법행위는 고의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책임제한을 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저작권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침해행위일인 2023. 11. 16.부터 피고들이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8.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10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